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142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. 11. 26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변경
정비하고,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을
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문의 변경 및 삭제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5조)
- 나. 조문제목의 변경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임시회 운영에 대한 근거 내용 신설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
- 나. 입법예고:
- 다. 기타
 - 1) 개정조례안: 붙임
 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4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”를 “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하고, 제4조를 제3조로 하며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임사회) ① 임사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 마포구청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각 임사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

제3조(중전의 제4조)의 제목 “(정례회의 집회일)”을 “(정례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,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.

제3조(중전의 제4조) 제2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정례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”을 “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”을 “예산안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정례회 등”을 “정례회와 임시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기)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,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<신 설></p> <p>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제4조(임시회) ①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 마포구청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p> <p>제3조(정례회)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,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정례회-----</p>

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

1. 2. (생략)

제5조(심의·의결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의 운영·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① ② (생략)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심의·의결) ① -----
-----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

-----.

② ----- 예산안

-----.

제6조(준용) -----
----- 정례회와 임시회-----

-----.

① ② (현행과 같음)

관 련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4조(임시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간 회의 총일수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정례회)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,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.

제4조(임시회) ①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 마포구청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

제5조(심의·의결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**예산안**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**정례회와 임시회**의 운영·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